##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5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김한규·전진숙·임미애

문대림 • 김용만 • 백혜련

양부남 · 장철민 · 이연희

한준호 · 김남희 · 김 윤

위성곤 • 백승아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

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, 수요자들은 민간 육아도우미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음.

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,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 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. 저출생시대,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실효적이고 신뢰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 가자격도입,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·등록, 서비스제공기관· 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(안 제2조제6호신설).
- 나.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에서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).
- 다.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·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(안 제7조).
- 라. 시·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여야 함(안 제9조).
- 마.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·운영하여야 하고,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,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

- (안 제11조 및 제11조의2).
- 바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(안 제13조).
- 사.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인력, 시설,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- 아.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함(안 제28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"을 "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서비스제공기관을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여성가족부장관"으로, "수사기관"을 "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②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을 채

용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장에게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의 범죄경력조 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아이돌보미의 자격)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·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 하고,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1.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
  - 2.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
  - 3. 성희롱 예방 교육
  - 4.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
  - 5.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
  - 6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성 · 인성 검사를 여성가족부

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의 교육과정, 제2항에 따른 적성· 인성 검사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,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
제9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"로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"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"으로 한다.

제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"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"을 각각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

"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- 1.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(단,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지정기관에 두는 아이돌보미에 한정한다)
- 2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(단,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지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)

제11조의 제목 중 "서비스제공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"를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자장 기준 한다.

①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) ①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(이하 "아이돌봄서비스제공지정기관"이라 한다)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

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,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였 거나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(이하 "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"이라 한다)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은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
제11조의3(결격사유) ①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부터

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여성가족부장관"은 "여성가족부장관"은 "여성가족

제12조제1항 중 "서비스기관 지정취소"를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·등록취소"로, "서비스기관의 장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서비스기관의 장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"로, "아이돌보미의"를 "아이돌보미 및 육아도우미의"로 하다.

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의 장은 육아도우미를 채용한 경우해당 육아도우미의 인적사항,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13조의 제목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"서비스기관"을 각각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.

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 제공지정기관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"를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15조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서비스기관"을 각각 "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, "지정"을 "지정 또는 등록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"지정"을 "지정 또는 등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지정을 받은"을 "지정을 받거나 등록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, "지정취소를"을 "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"로,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중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, "지정취소"를 "지정 또는

등록 취소"로 한다.

-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- 1.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2.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3.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4.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, 시설, 장비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7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
- 8.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9.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8조의 제목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. 제11조제3항 및 제11

조의2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중 "아이돌보미"를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아이돌보미"를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 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평가 및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드는 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 비용의 보조 기준·범위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제28조 중 "아이돌보미, 중앙지원센터"를 "중앙지원센터"로,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제28조의2의 제목 "(아이돌보미 실태조사)"를 "(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

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아이돌보미, 중앙지원센터"를 "중앙지원센터"로,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제30조 중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, "제19조제2항, 제19조의2제4항"을 "제19조제2항,"으로 한다.

제31조 중 "제17조제1항"을 "제17조제2항"으로, "서비스기관의 지정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"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4호 중 "제11조제1항"을 "제11조제3항"으로, "서비스기관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제17조제2항"을 "제17조제3항"으로, "서비스기관의 지정"을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"으로 한다.

4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

4의3.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임을 사칭한 자

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

아니한 자

4.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아이돌보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제4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.
-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의3제1항제24호 중 "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"을 "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으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아이돌보미"란 <u>제7조에 따</u>	4아이돌봄서
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	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
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	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
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	<u>람을</u>
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	
한다.	
5. "육아도우미"란 제11조에 따	5
라 지정된 <u>서비스제공기관을</u>	아이돌봄서비스제
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	공기관을
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6. "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이
	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
	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
	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
	<u>다.</u>
제6조의2(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	제6조의2(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
한 범죄경력조회) ① <u>특별시장</u>	한 범죄경력조회) ① <u>여성가족</u>
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	<u> 부장관</u>
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	

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은 아이돌보 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 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 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

			- <u>본인의</u>
동의를	받아	수사기관	

②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 은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본 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장에게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 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 동 중인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----

제7조(아이돌보미의 자격) ① 아 | 제7조(아이돌보미의 자격) ① 아 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 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.
- 1.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
- 2.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
- 3. 성희롱 예방 교육
- 4.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
- 5.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 식 개선 교육
- 6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 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 ·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 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 성・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

- 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 · 인성 검 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 미 자격을 부여하고, 자격을 부 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1.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
  - 2.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
  - 3. 성희롱 예방 교육
  - 4.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
  - 5.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 식 개선 교육
  - 6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<u>정하는 사항</u>

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성・인성 검사를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발 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의 교육과정, 제2항에 따른 적성 · 인성 검사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제7 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명의대여 등의 금지) ① 아 제8조(명의대여 등의 금지) ① 아 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 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 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누구든지 아이돌보미 자격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, 자격 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 제9조(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시 •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 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 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·운영 하여야 한다.

- ② · ③ (생 략) 제10조의2(건강진단) ① (생 략)
  -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 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(생략)
- 제10조의3(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)
  - ① (생 략)
  -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~ 5. (생 략)

<u>니 된다.</u>
제9조(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<u>특</u>
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
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<u>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</u>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건강진단) ① (현행과
같음)
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-
,
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3(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)
① (현행과 같음)
(2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- 6.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 6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---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 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- 7.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 7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---관 종사자 교육훈련
- 8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 | 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
  - ① (생략)
  -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| 체결 및 복무관리

- 2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 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・신체 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 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
- 3. 4. (생 략)
- 5.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

- 8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- ① (현행과 같음)

  - 1.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(단, 제11조 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 지정기관에 두는 아이돌보미 에 한정한다)
  - 2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 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・신체 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 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(단,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 스지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아 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)
  - 3. · 4. (현행과 같음)
  - 5. ----아이돌봄서비스제공

<u>스제공기관</u>의 서비스 운영 관 리·지원 및 서비스 홍보 6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- 제11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
 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(이하 "서비스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 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 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<u>서비스기관</u>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  - ④ <u>서비스기관</u>의 장은 중요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·도

_] ¬]
<u>기관</u>
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 <u>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</u>
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·시장
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
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아
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
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
제공기관을 지정・운영하여야
<u>한다.</u>
②
<u>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</u>
<u>관</u>
③아이돌봄서

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---
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 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<신 설>


####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의 등록 등) ① 제11조에 따 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(이 하 "아이돌봄서비스제공지정기 관"이라 한다) 이외에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 · 운 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,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 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. 등록 사항 중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.

② 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 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아 니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 하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

따라 지정 또는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(이하 "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"이라 한다)은 휴업 또는 폐업을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시작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 관은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 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 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아이돌보미와 아이의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

<신 설>

제12조(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) ① 시·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 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, 시설·인력 현 황자료 및 <u>서비스기관 지정취</u> 소 이력 등을 <u>서비스기관의 장</u> 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 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 야 한다.

제11조의3(결격사유) ① 제6조제1 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 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 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여성가족부장관관"은 "여성가족부장관및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본다.

제12조(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
서비스 안내 등) ①
아이돌봄서비스제
공기관 지정취소·등록취소
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
<u>관의 장</u>

② <u>서비스기관의 장</u>은 해당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, 경력, 자격정지·취소 이력,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, 방법, 절차, <u>아이돌보미의</u> 정보 및 제공 방법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<u>서비스기관</u>의 임무 등) ① 저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 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.
  - ② <u>서비스기관</u>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

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
<u>장</u>
③ 아이돌봄서비스등록제공기
관의 장은 육아도우미를 채용
한 경우 해당 육아도우미의 인
적사항,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
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
<u>있다.</u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
<u>o</u> }
이돌보미 및 육아도우미의
세13조( <u>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</u>
의 임무 등) ① 아이돌봄서비
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
어야 한다.
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
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<u>서비스기관</u>은 아이돌봄서비 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 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.
- ④ (생략)
- ⑤ <u>서비스기관</u>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.
- ⑥ <u>서비스기관</u>은 보호자와 협 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- ⑦ <u>서비스기관</u>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 공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 저선 제공)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

<u>.</u>
③ <u>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</u>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<u>.</u>
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ll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
선 제공)
아이돌봄서비스제공지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 다만,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1. ~ 8. (생략)

제14조(표준근로계약서 작성)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 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#### ② (생략)

제15조(보호자의 준수사항)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<u>서비스기관</u>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광역지원센터 및 <u>서비스</u> <u>기관</u>에 대한 권고 등) 시·도 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광 역지원센터 또는 <u>서비스기관</u>이

<u>정기관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표준근로계약서 작성) ①
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
이돌보미를 채용하는 경우에는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보호자의 준수사항)
아이돌봄서비스제공
<u>기관</u>
제16조(광역지원센터 및 <u>아이돌</u>
<u>봄서비스제공기관</u> 에 대한 권고
등)
<u>0}0</u>

페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
근 지역에 서비스기관이 없거
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
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
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
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
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
다.

제17조(지정 취소 등) <u><신 설></u>

돌봄서비스제공기관
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
관

제17조(지정 취소 등) ① 여성가 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·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중앙지원 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 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- 1.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2.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
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<u>지정</u>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0조의3제3항, 제10조의4
   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
  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
  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3. <u>서비스기관</u>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한 경우

4. ~ 6. (생략)

3.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
준에 미달하는 경우
4.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
력, 시설, 장비 등 기준에 미
달하는 경우
<u>②</u>
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<u>지정 또는 등록</u>
<u>지정 또</u>
<u>는 등록</u>
1
지정을 받거나 등록
<u>ॅ</u> ंटो
<삭 제>
3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4. ~ 6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 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 <u>기관</u> 관리·평가)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 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<u>제11조제1항</u>에 따른 운영 기준 <u>이 제10조의4제3항, 제11조제3</u>

	7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
	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
	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
	경우
	 8.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
	르지 아니한 경우
	9.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
	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
	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	③ 제2항지정 또는
	<u>아이돌</u> 봄서비스제공
	기관지정받거나 등
	<u> </u>
	<u> </u>
	<u> </u>
제	· 18조(광역지원센터 및 <u>아이돌</u>
''	본서비스제공기관 관리·평가)
	<u> </u>
	T)

-----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
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<u>서비스기</u>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 용을 지속적으로 관리·평가하 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③ • ④ (생 략)

제18조의2(<u>아이돌보미</u> 만족도 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아이돌보미</u>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.

## ② (생 략)

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 렁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지원할</u>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26조(비용의 보조) 국가나 지방

<u>항 및 제11조의2제1항</u>
② <u>아이돌봄</u>
<u>서비스제공기관</u>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 <u>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</u>
<u>관</u> 만족도 조사) ①
J.Jr.H
<u>아이돌봄</u>
<u>서비스제공기관</u>
 ① (처체코 가스)
② (현행과 같음) 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
세20소(미중의 시킨 3) ①
지원하여
<u> </u>
<u>'r 단의</u> 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나

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.

제2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 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<u>서비스기관</u>의 설치·운영자,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 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28조(지도 및 명령) 여성가족부 제28조(지도 및 명령) -----

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
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
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
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
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
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 이 경
우 제18조에 따른 평가 및 제1
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등
을 고려하여 운영에 드는 비용
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운영 비용의
보조 기준・범위・절차・방법
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
부렁ㅇㄹ 정하다

100001
제2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
궝)
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<u>아</u>이돌보미, 중앙지원센터, 광역 지원센터 및 <u>서비스기관</u>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수 있다.

제28조의2(아이돌보미 실태조사)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
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
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
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② · ③ (생 략)

제29조(질문 및 검사) ① 여성가 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<u>아이돌보미,</u>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<u>서비스기관</u>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·관리·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

	중
	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제:	· 28조의2(아이돌봄서비스 실태
	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
	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
	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
	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
	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
	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
	<u> </u>
	<u>한다.</u> ① _ ② (청체리 가야)
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세.	29조(질문 및 검사) ①
	<u>중앙지원</u>
	<u>센터아이</u>
	돌봄서비스제공기관

서류를	검사하게	할	수	있다.

#### ② (생략)

제30조(비밀누설금지)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, 서비스기관 및 제7조제4항, 제18조제3항, 제18조의2제2항, 제19조제2항, 제19조의2제4항,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, 아이돌보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1조(청문) 시·도지사,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,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## 제35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략)
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비밀누설금지)
<u>아이돌봄서</u>
<u>비스제공기관</u>
제19조제2항
제31조(청문)
제17조제2항
<u>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</u>
<u>정 또는 등록</u>
제35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 0
1. ~ 3.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4.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-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-기관 지정을 받은 자-

<신 설>

<신 설>

5. <u>제17조제2항</u>을 위반하여 중 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<u>서비스기관의 지정</u>을 다시 받은 자

6. • 7. (생략)

제3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4
제11조제3항
아이돌
봄서비스제공기관
4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
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
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
<u>록한 자</u>
4의3.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
여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
비스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
5. <u>제17조제3항</u>
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
<u>정 또는 등록</u>
6. · 7. (현행과 같음)
제37조(과태료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
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

	을 하지 아니한 자
<u> &lt;신 설&gt;</u>	4.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
	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을 하
	<u>지 아니한 자</u>
<u>3.</u> ~ <u>5.</u> (생 략)	<u>5.</u> ~ <u>7.</u> (현행 제3호부터 제5
	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